



제20609호 2023-10-24

**【법 들】**

- 법률제19739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 4
- 법률제19740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5
- 법률제19741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6
- 법률제19742호(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11
- 법률제19743호(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12
- 법률제19744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 17
- 법률제19745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18
- 법률제19757호(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22
- 법률제19759호(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33
- 법률제19760호(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34
- 법률제19761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41
- 법률제19762호(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 42
- 법률제19763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49
- 법률제1976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55
- 법률제19765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59
- 법률제19766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 60
- 법률제19767호(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62
- 법률제19768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81
- 법률제19769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96
- 법률제19770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97
- 법률제19771호(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99
- 법률제19772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 101
- 법률제19773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103
- 법률제19774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104
- 법률제19775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105
- 법률제19776호(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106
- 법률제19777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109
- 법률제19778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 ..... 110
- 법률제19779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112
- 법률제19780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 115

## [대 통 령 령]

- 대통령령제33829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117
- 대통령령제3383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120

## [부 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17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23
- 해양수산부령제627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27

## [고 시]

- 교육부고시제2023-33호(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130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2호(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 발급) ..... 139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6호(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3차 승인) ..... 140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7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삼척당저 행복주택)) ..... 142
-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5호(하천수사용허가) ..... 144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92호(하천수 사용허가) ..... 145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94호(하천수 사용허가) ..... 152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0호(시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알림) ..... 153
- 문화재청고시제2023-126호(사적 「고성 건봉사지」 및 보물 「고성 건봉사 능파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 154
- 문화재청고시제2023-127호(사적 「고성 문암리 유적」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157
- 법무부고시제2023-551호(국적이탈) ..... 166
-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31호(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 170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0호(국적취득) ..... 171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23호(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원주공항 업무용 전기차충전기 설치공사)) ..... 172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1호(국적취득) ..... 173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9호(인지에의한 국적취득) ..... 174
-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0호(하천점용허가) ..... 175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0호(도로구역결정(폐지),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184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075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17 순천 왕지)) ..... 185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6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 189
-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8호(국적취득) ..... 221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1호(국적취득) ..... 222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7호(국적상실) ..... 223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5호(항로표지 현황변경(죽변항내측동방파제등대 등 46기)) ..... 224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6호(시설항로표지 위치이탈 및 위치복구 고시(금음리울진군등부표 등 2기)) ..... 228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21호(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 229
-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52호(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 230
- 환경부고시제2023-246호(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 231

## [공 고]

- 공군공고제2023-1호(공시송달) ..... 232
- 공군공고제2023-2호(공시송달) ..... 233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94호(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 234
-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34호(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235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78호(민간입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37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04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38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88호(시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폐지 공고) ..... 242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3-35호(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사전 청문 알림) ..... 243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91호(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 245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64호(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통지) ..... 247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3-287호(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및 점심 휴무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248
- 환경부공고제2023-595호(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 250

## [법 원]

- 형사보상결정공시(인천지방법원) ..... 251

## **【지방자치단체】**

- 경상남도교육청마산도서관공고제2023-16호(마산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 예고) ..... 253
- 서울특별시고시제2023-449호(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 257
-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3-14호(그린스마트스쿨 구례중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 269

## **【기 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91호(관인(공인)등록) ..... 271
- 부산대학교공고제2023-77호(관인(공인)등록) ..... 272
- 압수물환부공고 (군산지청) ..... 273
- 압수물환부공고 (안양지청) ..... 275
- 압수물환부공고 (제주지방검찰청) ..... 277
- 하동우체국공고제2023-1호(관인 폐기) ..... 278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 이상민

●법률 제197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등”을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47조”를 “제47조, 제50조의3”으로 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

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방법 및 등록 기준·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80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작동방법 및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발급·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습운전면허”를 “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0호”를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시·도경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2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3.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해체·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47조제5항 중 “대행”을 “대행 또는 위탁”으로 한다.

제1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3(벌칙)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16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등록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지 아니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한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